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임.

3. 주요내용

가.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제2조)

1) 기존의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경제범죄를 정의하되 처벌조항의 한정적 열거를 병행하여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존 분류에 따른 공직자·선거범죄 등은 관련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안 제2조제1호, 제2호).

2)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질서저해범죄의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 불송치 사건에 관한 무고 인지 제한 등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법질서저해범죄를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명시하여 수사개시 가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 정리(안 제2조제3호).

나.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안 제3조)

- 1)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 강제.
- 2)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의 별건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하여 관련인지 남용 방지.

다. 경과규정(부칙)

- 1)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일인 2022. 9. 10.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부칙안 제1조, 제2조).
- 2) 기존 분류에 따른 선거범죄는 개정 「검찰청법」 부칙에 따라 202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 허용(부칙안 제3조).
-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 행위로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는 이 영에 따른 부패범죄로 간주(부칙안 제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
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
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사무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
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별표 1에 규정된 죄
2. 경제범죄: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별표 2에 규정
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가.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
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의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규정에 따른 선거범죄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 전 행위로서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행위 당시의 규정을 말한다)가 적용되는 범죄는 이 영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패범죄(가중처벌, 준용 또는 신분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부패행위 관련 부패범죄
 - 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41조, 제227조, 제229조(제227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 나. 「국가정보원법」 제22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
3.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직자윤리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항,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죄
4.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0호(같은 법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제2호, 제5항, 제257조, 「정당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죄
5.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2항, 「의료법」 제88조제2호, 제89조제3호,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 「병역법」 제92조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죄
6. 보조금·학교회계 관련 부패범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제4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사립학교법」 제73조, 제73조의2,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
7. 범죄수익·자금세탁 관련 부패범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미수범에 해당하거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별표 2]

경제범죄(제2조제2호 관련)

1. 「형법」상 경제범죄

「형법」 제2편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7조, 제248조에 한한다),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 제324조, 제327조에 한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60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죄(가중처벌, 준용 또는 신분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업 관련 경제범죄

「상법」 제622조부터 제629조까지, 제634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5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3. 조세 관련 경제범죄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3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4. 금융 관련 경제범죄

가. 금융업 관련 경제범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1항,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 제171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같은 조 제3항 중 제27조의2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1항, 제2항, 「보험업법」 제197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 제204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해당하는 죄

나. 금융거래 관련 경제범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부터 제644조의2까지, 제647조부터 제654조까지, 제657조, 제658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6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죄

5. 공정거래 관련 경제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외무역법」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해당하는 죄

6. 기술 및 자원 보호 관련 경제범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18조의4까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제22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

7. 지식재산권 관련 경제범죄

「특허법」 제225조부터 제229조의2까지,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 「상표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8. 개인정보·정보통신 관련 경제범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4호까지, 제7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죄

9. 부동산·건설 관련 경제범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도시개발법」 제79조의2부터 제82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부터 제58조까지,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부터 제97조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32조에 해당하는 죄

10. 보건의약 관련 경제범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를」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다만, 마약류를 단순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의료법」 제87조, 제87조의2제2항,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11. 경제범죄 관련 조직범죄

「형법」 제114조(다만, 이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12. 사행행위 관련 경제범죄

「경륜·경정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9조의2까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미수범에 해당하거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별표 3]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제2조제3호 관련)

1. 「형법」 제2편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거나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해당하는 죄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중요 범죄) 「<u>검찰청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u>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u>”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p> <p>1. 부패범죄: <u>다음 각 목의 죄</u> 가. 공무원,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u>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이하 “<u>주요공직자</u>”라 한다)이 범한 「<u>형법</u>」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u>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u>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p> <p>나. 「<u>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 · 제3조 · 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p>	<p>제2조(중요 범죄) 「<u>검찰청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u>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u>”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p> <p>1. 부패범죄: <u>사무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u> 별표 1에 규정된 죄</p> <p>2. 경제범죄: <u>생산 · 분배 · 소비 · 고용 · 금융 · 부동산 · 유통 · 수출입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u> 별표 2에 규정된 죄</p> <p>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죄 가. <u>무고 · 도주 · 범인은닉 · 증거인멸 · 위증 · 허위감정통역 ·</u></p>

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
하는 죄

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

라. 「정치자금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
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하
다)

마. 「의료법」 제88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
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하
다) 및 「약사법」 제94조제
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
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
정한다)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
우를 포함한다)

바. 「형법」 제357조 및 제359
조(같은 법 제357조의 미수
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
는 죄

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
는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
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
도록 규정한 범죄

제7조까지 및 제9조에 해당
하는 죄

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해
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상법」 제630조에 해당하
는 죄

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
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
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
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
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같은 법 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
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
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한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
조, 제655조 및 제656조에 해
당하는 죄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
12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
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한다)

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
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

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죄

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

하.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

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가목부터 바목까지,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형법」 제227조, 제229조(같은 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제235조(같은 법 제227조 또는 제22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에 해당하는 죄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8조

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

하는 죄

4. 선거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8조, 「국가

공무원법」 제8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 「예비군법」

제15조제3항 및 「국가정보

원법」 제18조제1항·제2

항에 해당하는 죄

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

터 제235조까지, 제237조부

터 제239조까지, 제239조의

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

지, 제242조의2 및 제243조

부터 제259조까지에 해당하

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마.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정당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국민투표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02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차.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에 해당하는 죄

카. 「군형법」 제94조에 해당
하는 죄

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파. 「농업협동조합법」 제172
조에 해당하는 죄

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
78조에 해당하는 죄

거. 「신용협동조합법」 제99
조제3항[같은 법 제27조의2
(같은 법 제72조제8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
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너.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

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머.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

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

5.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
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
한 죄

6.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
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
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
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
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
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
죄(數罪)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
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
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
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
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
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나.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
55조 및 제356조의 죄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란 범인·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
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 | |
|--|
| <p>2.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항
에 따른 동일한 범죄</p> <p>3.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
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p> <p>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